

디지털도서관 도서관보상금 제도

정 석 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목 차 >

I. 서 론

II. 도서관보상금제도의 개관

III.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의 면책규정

IV.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

V. 개 선 방 안

VI. 결 론

※ 부 록

※ 참고문헌

I. 서 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도서관은 정보이용자의 새로운 지식·정보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날로그 형태는 물론 디지털 형태의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써 사서들이 소장 자료나 혹은 타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 - 복제의 편리성 및 신속성, 복제의 질적 수준의 무변성, 저작물의 대량 복제 가능성, 조작과 변경 및 통합 가능성,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전달 - 때문에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보다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므로 사서들은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도서관 면책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환경에 따른 법개정의 내용이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원문의 안방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세계 최초의 도서관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지식정보의 공적 접근 기회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고 있음은 물론 디지털도서관(이하 “DL”)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도서관이 우려하고 있다.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개별 대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조치와 과금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며, 1년 동안 과금한 보상금을 모아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상금 내역을 센터의 약정서의 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도서관보상금의 과금은 정부나 센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전담하게 되어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DL의 결과물로 인하여 사서들은 센터의 수금원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것이며, 결국은 도서관서비스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와 DL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저작권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와 센터는 도서관과 사서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는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센터는 도서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안방도서관의 실현

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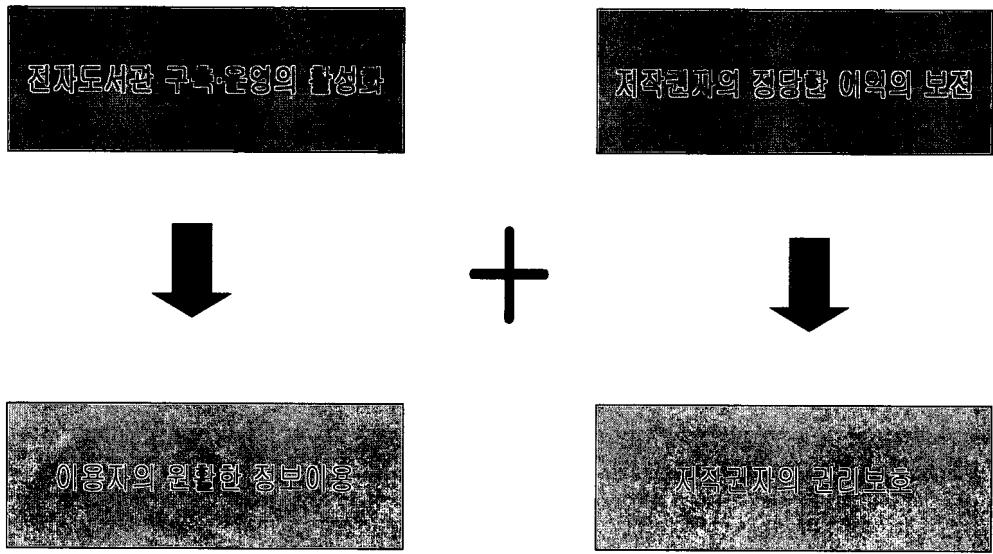
II. 도서관보상금제도의 개관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사전적인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디지털 자료의 출력과 도서관간 전송의 두 가지 행위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료 등의 경우에는 이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도입배경 및 목적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도입은 DL 구축과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관련된 권리처리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써 DL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되는 수많은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으로 저작물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을 보다 손쉽게 도서관 상호간에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일정 정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이 도입배경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타적인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중의 하나가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며 디지털환경에서의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그리고 저작권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함이 도입 취지이다.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만,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서관 등에서의 정보 이용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목적

2. 보상금 기준과 보상금액

문화관광부는 2003년 7월 26일 도서관보상금 기준을 제정·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9호】하였다. 아래 <표 1>은 문화관광부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작성·고시한 “도서관보상금 기준”이다. 보상금 기준은 자료를 판매용과 비매용으로 구분하여 판매용에 대해서는 1면당 5원을, 비매용에 대해서는 1면당 3원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적용하였으며, 디지털 전송에 대해서는 판매용에만 파일당 20원의 전송에 관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보상기준과 보상금액

구 分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 매 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 매 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 매 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 매 용	1면당 3원	-

<표 2> 용어의 정의

출 력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 송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 면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1파일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물을 말하며, 정기간행물은 디지털 물을 말한다.
단행본	정기간행물이 아닌 모든 어문저작물을 말하며, 학위논문, 단행본, 정부간행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임.
정기간행물	주간, 월간, 계간, 등의 정기간행물을 말하며, 매년 발간되는 백서, 연감 등은 정기간행물이 아닌 것으로 봄.
판매용	정가, 회원가, ‘가격은 출판사에 문의’ 등의 모든 대가 표시가 있는 도서 등을 의미. 발간된 복제물 중 일부만이 판매용으로 발행되는 경우 50권은 판매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판매용 도서 등의 범위에 속하게 됨.
비매용	판매용으로 발행되지 않은 모든 도서 등을 의미함.

3. 보상금제도의 대상행위

도서관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

- 도서관 등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CD-ROM 등으로부터의 출력
⇒ 구입 또는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다름. 다만 구입 자료의 경우 구입시 출력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면 관행에 따라 출력에 대한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서관 등에서 자체 구축한 DB로부터의 프린터 출력

-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의 프린터 출력

나.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경우
※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 경과한 판매용 도서

4. 보상금 지급방법과 절차

- 가. 도서관 등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단체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8조 제5항). 그런데 도서관 등은 저작재산권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에 도서관보상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 문화관광부에서는 2003년 10월 15일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로 허가받은 센터를 도서관보상금제도 관련 저작재산권자 단체로 지정하여 분배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도서관 등은 센터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 나. 도서관 등은 복제·전송한 다음해 4월 30일까지 보상금을 그 복제·전송의 내역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 다. 저작물 이용 내역서의 내용
저작물 이용 내역서에는 서명/논문명, 저자명, ISSN/ISBN, 단행본/정기간행물의 구분, 출판사, 발행년도, 유/무가지, 이용형태(열람/출력), 이용량, 보상금 액수 등
- 라. 보상금 지급은 개별도서관 등과 저작재산권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정할 수 있다.

5. 보상금의 지급 주체

- 가. 출력의 경우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 등이 보상금 지불의무
- 나. 전송의 경우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이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
 - 전송한 도서관은 전송받은 도서관(즉, 실제 이용자가 있는 도서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보상금의 확보 방법을 결정
 - 전송한 도서관은 전송 내역만을, 전송 받은 도서관은 각각의 다른 도서관

에 지불하여야 할 보상금과 전송 받은 내역을 작성하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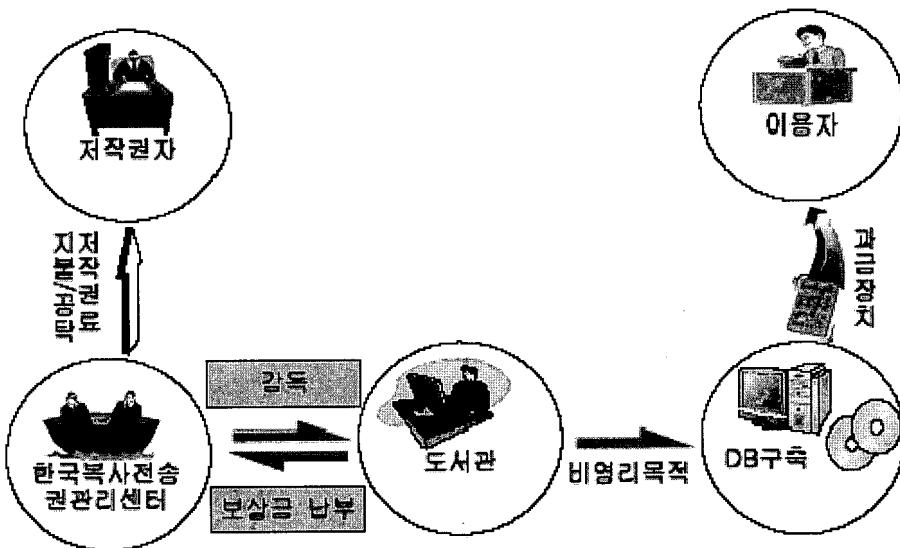
- ▣ A도서관의 이용자 요구로 B도서관에서 A도서관으로 전송 할 경우 전송에 대한 과금은 B도서관이, 출력에 대한 과금은 A도서관이 지불할 의무
- 다. 도서관 등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단체에 지급하거나 공탁

<표 3> 보상금 지급의 책임관계

구 분	책 임	근거 규정
출 력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 등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
전 송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

6. 보상금 징수와 분배

- 가. 각 도서관 등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1년 동안 과금한 보상금과 사용내역을 제출
- 나.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에 의거 저작재산권단체로 지정된 센터가 각각의 도서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이를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



[그림 2] 보상금 징수와 분배

7. 과금시스템 구축 및 권리보호 조치

도서관은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과 출력 내역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과금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함은 물론 저작권법이 정하는 도서관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비롯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열람과 복제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장치와 암호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저작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컴퓨터나 복제기기 등에 저작권에 대한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불법적인 복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금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약정서

가. 약정서의 주요 내용

- 도서관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복제·전송한 다음해 4월 30일까지 복제·전송 내역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
- 보상금 연체시에는 연체 보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도서관은 원문 DB 저작물 이용 내역 기록을 센터의 요구에 맞게 유지 및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 도서관은 이용 내역 기록을 10년간 보관
- 도서관은 원문 구축 후 2개월 이내에 구축된 저작물 및 저작자 내역을 센터에 송부
- 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대리인의 관리, 보상금의 정산, 보상금 지급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도서관에 전가

나. 약정서 체결

<표 4>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구 분	대리인 유무	제출 서류
원문 DB 구축 · 전송도서관	○	약정서, 대리인의 이행각서
	×	약정서
전송받는 도서관	○	약정서, 대리인의 이행각서
	×	약정서

<표 5> 도서관 등이 부담하는 경우

구 분	제출 서류
원문 DB 구축 · 전송도서관	약정서
전송받는 도서관	약정서

III. 복제 · 전송에 관한 도서관의 면책규정**1. 면책의 의미**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 ·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인정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돋고 있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면책도 도서관의 문화적 의의와 공익적인 의미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저작권 제한의 일종이다. 도서관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그 보관된 저작물을 무료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면책 인정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요건을 상세히

고 까다롭게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그 면책을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과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면책요건에 해당된다 함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혜택을 받지 않고,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면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기에 앞서 저작권자의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과 같이 저작물 사용이 빈번하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개별저작물에 대한 사용 혜택을 개별적으로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저작물의 적법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

2. 복제 및 전송의 주체

저작권법 제28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보관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중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다수의 도서관이나 자료실 등에 그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업체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 사원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료실이나 도서관의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저작권법은 그 시행령을 통하여 전송을 허용하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현행법은 공중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모든 도서관과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료실, 문고, 기록보존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모두 그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 복제 및 전송의 주체와 관련하여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에 대한 것으로 보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와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진 복제 즉 도서관 소속원의 업무로 이루어진 복제만으로 좁게 해석하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이 복사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서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복제라고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범주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관행으로 보인다.

3. 도서관의 면책 규정

저작권법 제28조가 인정하는 도서관의 면책규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다. 이 경우에도 복제는 조사 및 연구의 목적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복제물은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저작물을 전송하여 디지털형식으로 열람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복제물을 디지털로 제작하여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파일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캐너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디지털형태로 기록된 저작물의 아날로그 복제물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하여 고시한 도서관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요청에 의한 복제의 경우라도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면책이 인정되며,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디지털로 복제하여 판내의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경우에도 동시열람자수를 소장부수 또는 이용허락 받은 수로 제한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의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이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을 보존의 필요에 의해서는 아날로그 복제는 물론 디지털형태로도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보존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량을 복제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이 디지털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의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이다.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의하여 절판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디지털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도서관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매용 도서의 경우에

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디지털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복제·전송에 대한 도서관의 면책여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 같다.

<표 6> 도서관 면책 규정의 내용

복제 및 전송의 유형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면책의 요건
이용자의 요청 (조사연구목적)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 (디지털 복제 불가)	1인 일부분 디지털 저작물로부터 출력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복제·전송	동시열람자수 제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안방서비스 목적 전송은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자체보존	도서 등의 복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 복제 가능 단,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 복제 불가
다른 도서관 등 의 요청	보존용으로 도서 등의 복제	디지털 복제 불가
	열람을 위한 도서 등을 복제·전송	판매용의 경우 발행 후 5년경과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IV.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도서관간 디지털 자료의 복제·전송을 허용하기 위하여 세계 초유의 도서관보상금제도가 획기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위주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지식정보의 공적 접근 기회를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많은 도서관과 이용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에 대한 과금시스템은 개별허락계약의 일종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보상금을 센터에 지급할 의무는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도서관에 있으며, 도서관은 일정기간 동안 보상금을 과금하여 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며, 심하면 고발되어 벌금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센터는 분배시스템에 의해 30~40%의 센터 운영비용을 제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도서관과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별허락방식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듈다. 이용자와 저작자를 연결하기 위하여 현재 구축한 많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여 서명, 저자, 출판사, 출력페이지 등을 이용자의 실명과 함께 목록화하기 위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과금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운영 경비가 많이 듈다. 보상금 지급시 그 내역을 일일이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기록의 유지, 보상금 관리 같은 시스템의 운영상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셋째,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확성과 이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약정서에 따르면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개별도서관에 떠넘기고 있고, 센터는 보상금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만을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센터는 감독의 입장에서 도서관 사서들을 수금원으로 전락시켜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이다. 도서관은 원문 DB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도서관과 사서가 센터의 통제를 받고 법의 제재로부터 불안해해야 한다. 도서관에도 의무만큼의 권한이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넷째, 도서관에서의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시장 교섭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며,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저작권자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다섯째,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운영 경비의 투입에 비하여 징수할 보상금이 너무 적다. A대의 경우 과금시스템 개발에 1억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투입하는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경비, 인건비에 다시 도서관 복사업소의 복사 카드시스템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천만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A대의 경우 1년 최대 출력량은 1백 20만장 정도이다. 도서관

보상금이 면당 5원으로, 연 6백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개발비가 20년 정도의 보상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여섯째, 이용자와 사서간에 출력 오류에 대한 보상금 반환요청 및 불편사항 등으로 인한 잦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이 많은 도서관보상금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꼭 이 시점에서 시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를 채택하여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 명칭상의 문제점

도서관보상금이라는 개념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줌으로써 저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피해를 정부 등에서 보상해 주는 '공공대출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의 전송·출력에 부과하는 과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교과서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교과서 보상금과 도서관보상금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보상금이란 이익이 발생하는 데에 제공된 자기의 재산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보상금은 분명히 교과서를 발행,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에 저작물을 제공한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도서관보상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창출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료로 제공할 뿐인데 마치 도서관에서 만들어 낸 이익금으로 보상금을 저작자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상금은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내는 것이고, 도서관은 단지 자료와 장소, 시설을 제공한 것뿐이므로 보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3. 약정서 내용상의 문제점

약정은 계약과 동일한 말로 법률적 용어로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이해한다. 도서관과 센터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도서관은 센터가 제시한 약정서의 불

합리한 내용을 반드시 수정하여 센터와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약정서는 “도서관”과 “센터” 사이에 전자에게는 의무만을, 후자에게는 감독의 입장에 편향된 약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약정서상의 불합리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도서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제28조가 ---”이라 하여 통상 계약상 약자의 입장인 “을”에 개별도서관을 두고 우월적인 위치인 “갑”에 센터를 위치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을 그들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폐거를 이루었다. 교과서 보상금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업체의 단체와 약정을 맺고 있다. 그 전례에 따를 것 같으면 개별도서관이 아닌 도서관단체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저작재산권자들에게는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게 만들 어준 기관이다. 아날로그 저작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는 우월적인 입장에서 도서관을 약자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제4조(보상금 지급 및 대행)

“② “갑”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갑”的 지급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은 “갑”的 분배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도서관이 과금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분배가 불투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즉 센터의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저작재산권자에게 얼마가 분배될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도서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과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과금한 보상금은 있을지라도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되는 보상금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 또한 보상금이 과연 저작재산권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② “을”이 보상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연체보상금에 20%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관에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가산금을 물리려고 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월적인 “갑”的 횡포를 보여주는 조문이라 생각한다. 도서관보상금제도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전혀

없는 도서관으로서는 가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서들은 센터를 위하여 도서관보상금을 아무런 대가없이 모아 주는 것도 부족하여 금전적인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문이다.

“③ “을”은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의 분배 시기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이를 “갑”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공탁 받은 보상금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이를 무기한 위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센터의 잘못인데 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 제8조(보상금의 지급 등)

“④ “을”이 대리인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보상금의 정산, 대리인의 관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을”이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약정서와는 별도로 센터와 대리인과 별도의 이행각서를 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관리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불합리한 조항이며, 이것은 센터의 업무태만 책임을 도서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 기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제7조의 ‘저작물 이용내역 기록유지 및 기록제출 부분’, 제11조의 ‘원문 DB 구축 후 2월 이내에 구축된 저작물 및 저작자 내역 송부 부분’, 제12조의 ‘이행사항 조치 및 협조’ 등은 도서관과 센터 쌍방간의 공평한 약정사항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센터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보인다.

4. 도서관 이용의 유료화 논란

도서관은 저작물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료의 평등한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

다. 이로 인해서 도서관의 무료 이용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원문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저하시킴은 물론 DL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상 보상금 지급의 주체는 분명히 도서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부담하게 될 주체는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상금을 이용자의 저작물 출력 및 전송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자칫 저작물 이용의 유료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저작물 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또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는 저작물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일선 도서관은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단순히 복사요금의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둘째,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자료구입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어려운 도서관 형편을 고려한다면 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설득력과 의미가 약하다고 본다.

셋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도서관보상금제도에서는 그 실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 제도에서는 도서관보상금 지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도서관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별허락방식을 포괄허락방식으로 변경한다면 보상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을 도서관 면책규정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는 2000년과 2003년에 걸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왔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관한 제한을 법에 수용하여 도서관간 전송을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무제한의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취해진 2000년 개정저작권법시행령에서는 복제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도서관 등의 일부 도서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저작권법간의 갈등의 빌미가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드러난 도서관의 면책 규정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이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2년 여의 개정 노력 끝에 2003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동년 5월 27일 공표됨으로써 도서관간 복제·전송 문제는 일단락 되게 된다. 그러나 2003년 개정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은 조문이 길고 구조가 복잡하며, 바뀐 내용도 많을 뿐더러 세계 초유의 획기적인 도서관보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실 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라는 양측의 균형 유지와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도서관보상금제도라고 이해한다. 이는 도서관간의 디지털 자료 복제와 전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자는 제도이다. 즉 국가전자도서관 및 각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데이터베이스와 e-book, 전자저널, 상업원문데이터베이스 등의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제한 요소가 너무 많아 정부의 이런 구상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제한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전송은 도서관과 도서관 간에만 가능하다. 둘째, 원문 열람이 캠퍼스내가 아닌 도서관내에서만 가능하다. 셋째, 원문 자료의 Download가 불가능하고 출력만 가능하다. 넷째, 동시 열람자수를 이용허락 받은 수 또는 소장 부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판매용 도서는 발행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디지털 저작물만 전송이 가능하다. 여섯째, 원문 자료의 열람에도 비용이 듈다. 일곱째,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도서관이 보상금을 모아서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와 운영 경비 문제 등으로 각 도서관이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일반 공개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여덟째, 팩스 및 Ariel 시스템을 통한 상호대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현실성이 없는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는 그 궁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현실을 무시한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서관과 사서를 예비 범법자 집단으로 가정하고 저작권 단체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등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도서관 등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 조정내역

조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2003.7.1 시행)	비고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 국립도서관등 약 69개 도서관 만 가능	- 제한 규정 삭제 - 디지털 복제 범위 조정 (자료의 자체보존과 관내· 관간 열람목적 전송을 위하여 가능) ※ 당해 디지털 복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전자출판 의 발전과 조화
열람목적 관내전송	- 동시 열람자수 제한 없음 - 저작권 제한 (무료)	- 동시 열람자수 : 소장 부수 또는 이용허락 받은 수로 제한 - 저작권 제한(무료)	
열람목적 관간전송	- 대상제한 없음 - 저작권 제한 (무료)	- 비판매용 도서 및 발행된 지 5년 이상 경과 도서만 가능 - 저작권 제한 (도서관보상금제도 적용)	
디지털 자료의 출력	- 규정 없음	- 저작권 제한 (도서관보상금제도 적용)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예외	- 규정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을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비판 매용 도서에 대해 도서관보상 금 지급의무 배제 ※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 으로 발행된 경우 제외	
기술적 보호조치	- 복제방지, 암호 조치, 변경확인 장치 등	- 기존 기술조치에 추가하여 '도서관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치 설치' 의무화	

V. 개 선 방 안

앞에서 도서관보상금제도의 개관, 도서관의 면책규정, 약정서의 불합리성, 도서
관과 센터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DL과 연계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도서관보상금제도가 DL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저작권법 개정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왔지만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짐으로써 디지털환경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와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Digital Contents 구축, 상호대차서비스의 확대,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전달체계의 구축, 디지털 자원의 공동 개발 및 이용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아 도서관의 일부 기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서가 범법자가 될 개연성이 항상 상존하며 과중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서가 오히려 이용자를 감시하고 불편을 조장하는 방해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대차(ILL)나, 도서관내에서의 상업적 복사 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전송범위를 도서관으로 한정하여 DL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용자보다는 저작자의 편에 치우쳐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용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조항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DL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저작권법 제28조 1항 1호에서 명시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에서 “일부분”的 애매모호함을 불식시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행본의 경우 일부분의 복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학위논문은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1차적 자료이며, 특정 연구에 대한 종합적 산물로서 이용자들은 일부가 아닌 전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이용자들의 조사·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도서관은 정보제공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물 전체에 대한 복제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디지털 원문 서비스 영역은 “도서관 등의 안”에서 “대학 캠퍼스 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8조 2항에서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대학별로 구독하고 있는 국내·외 상용데이터베이스의 열람서비스 제공시 대학 내 캠퍼스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원문의 열람 범위 역시 도서관이 소속된 대학 캠퍼스 내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저작권법 제28조 2항의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동시열람시의 이용자 수에 대한 문제로서 원문DB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도서관에 원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을 도외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부수가 각각 이어서 개개 파일별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판매용 도서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라. 디지털 자료의 관외전송이 도서관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향후 도서관이 지향하는 것은 디지털 원문 자료의 안방서비스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방으로의 전송이 허용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의 안방전송이 제한적으로나마 면책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마. 저작권법 제28조 제4항의 “도서 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는 조항은 도서관의 Digital Contents 구축을 막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도서관이 보존 자료를 Digital화하고 On-Line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후에 이 디지털 복제물이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고 B사업자가 Digital 복제물을 출시하여 판매할 경우 A도서관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자원을 폐기하고 B사업자가 제작한 디지털 복제물을 구입하여 대체보유 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디지털 자원의 개발 일자를 기준으로 A도서관에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바. 팩스 및 Ariel 시스템을 통한 상호대차가 면책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 대학에서 간행한 비판매용 도서 즉 학위논문, 학술잡지 등은 저작재산권단체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저작물이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제도의 개선

가. 포괄허락 방식으로 변경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에 대한 과금 방식은 개별허락 방식의 일종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허락 방식을 도서관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포괄허락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문제 발생의 대부분이 개별허락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세계 최초의 실험적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과도기적으로 포괄허락 방식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많아져서 저작재산권자 개인별로 분배되는 보상금이 상당한 수준이 될 때 완벽한 제도를 구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약정 방식을 포괄허락 방식으로 바꾼다면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양, 접속 건수, 컴퓨터 수, 프린터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계약하면 될 것이다.

나. 과금정산 방식의 개선

과금시스템의 정산방식을 단일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의 과금정산 방식은 전송을 행한 도서관과 출력이 이루어지는 도서관에서 이중으로 부담을 갖게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어느 한쪽으로 도서관의 정산방식으로 단일화 하여야 한다. 또한 화면으로 열람하기만 하고 실제로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지털 원문 전송의 경우에는 도서관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약정 체결 당사자 변경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전송의 경우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이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약정서에 따르면 전송받는 도서관과 센터가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 비용은 두 대학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1999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계재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저작권 단체와 교과서를 제작하는 단체가 약정을 맺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약정 체결 당사자를 개별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단체”가 되어야 한다.

라. 약정서 내용 변경

앞에서 지적한 도서관보상금제도 관련 약정서의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약정서 상의 개별도서관과 센터와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도서관계의 반발로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센터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센터는 현재 약정서의 불합리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서관보상금 명칭의 변경

도서관보상금이란 개념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줌으로써 저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피해를 정부 등에서 보상해 주는 “공공대출권”을 지칭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의 전송·출력에 부과하는 과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안방도서관의 개념에서 보면 앞으로 도서관보상금은 도서관에서보다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부과할 때 “도서관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징수한다면 이용자는 서비스 수혜의 보상으로 도서관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왜곡 해석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함으로 그 명칭을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저작물 이용료”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4. 국가통합시스템 구축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는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금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따른 과금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단위 도서관이 제각각 구입해서 설치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 비용 면에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방도서관을 지향하면서 국가가 당연히 만들어야 할 시스템을 개별도서관에 미룬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개별도서관의 프린터기마다 부착해야 하는 카드리더기 방식이나 프린터서버 방식 등 과금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규모는 막대하므로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웹 환경으로 중앙정산방식의 표준화된 과금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도서관계의 공동 대응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도입은 DL 구축과 원문의 안방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써 DL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지식 정보의 공적 접근 기회를 상당부분 축소시켜 이용자들의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학도서관협의회와 단체들은 회원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 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가 공동으로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VII. 결 론

디지털기술은 도서관과 저작권제도 양쪽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저작권과 도서관은 모두 인류의 지적 재산을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꾀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도서관은 저작권제도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디지털 저작물을 보다 손쉽게 도서관 상호간에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일정 정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현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이용자로부터 보상금 부담을 떠안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 접근에 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도서관 자료 이용의 유료화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도서관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배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

급할 것으로 본다.

앞에서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 저작권법상의 문제, 제도운영상의 문제, 명칭상의 불합리성, 예산상의 문제, 유료화 논란, 센터와 도서관간의 이해의 충돌 등 - 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을 앞세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단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도서관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의 지원과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법과 제도를 고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정책 당국은 세계 최초라는 공명심에 집착하지 말고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명분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여 도서관의 공익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도서관도 저작권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분하고도 냉철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저작권 관련 사항에 있어서 그간 도서관계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저작권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루어질 저작권법 개정 과정을 도서관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작권제도에 대한 충실하고 합리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도서관의 공익적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조화로운 균형의 합일점을 찾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부 록>

I. 현행 저작권법과 저작권법시행령 관련 조문

저 작 권 법	저작권법시행령
<p>제28조(도서간 등에서의 복제등)</p> <p>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개정 1991.3.8, 1994.3.24, 2000.1.12, 2003.5.27></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p> <p>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결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②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p>	<p>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p> <p>법 제28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그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3.7.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전문개정 2000.7.27] <p>제3조의2(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p> <p>법 제28조제6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3.7.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가. 그 도서관 등과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이하 "도서관 등의 이용자"라 한다)가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p>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5.27></p>	<p>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나, 도서관 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p>
<p>③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p>	<p>다.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p>
<p>④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께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신설 2003.5.27]</p>	<p>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본조신설 2000.7.27]</p>
<p>⑤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27]</p>	<p>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p> <p>①도서관 등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저작재산권자 단체"라 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도서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복제·전송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보상금을 그 복제·전송의 내역과 함께 저작재산권자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p>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p>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7]</p>	<p>③제23조 내지 제25조(제24조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자단체의 지정, 업무규정, 회계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중 "지정단체"는 각각 "저작재산권자단체"로, "설연자"는 각각 "저작재산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3.7.10]</p>

II. 저작권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의견서(안)

1. 개정의 필요성

저작권법의 정신은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즉 저작권법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문화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문화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저작물은 선인들이 쌓아놓은 문화유산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정한 저작물은 앞서간 선각자들의 유산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인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존속기간의 제한 등을 통하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로 저작권법에는 제6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그 만큼 도서관이 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해온 바가 크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선대의 인류 문화유산을 유지 계승하며 당대의 학술자료와 디지털 정보를 수집, 링크, 다운로드, 정리, 보존, 축적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학술 발전과 문명 진보에 기여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사명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서의 재량권 또한 최대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와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Digital Contents 구축, 상호대차서비스의 확대,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전달체계의 구축, 디지털 자원의 공동 개발 이용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아 도서관의 일부 기능이 마비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서가 범법자가 될 개연성이 항상 상존하며 과중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조력해야 할 사서가 오히려 이용자를 감시하고 불편을 조장하는 방해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디지털도서관(이하 DL)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대차(ILL)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전송 범위를 도서관으로 한정하여 DL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지 않게 해석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내에서의 상업적 복사 행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용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조항이 많다. 특히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도입은 그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현실을 무시한,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서관과 사서를 예비 범법자 집단으로 가정하고 저작권 단체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위논문을 생산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 디지털화하고, 자비로 과금 장치를 하며, 보상금을 납부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도서관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반면에 저작권단체는 모든 책임을 도서관에 전가하고 과실만을 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위논문을 비롯한 대학 및 연

구기관에서 간행한 비판매용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유통성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지금 원문DB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의 대부분이 대학도서관이며, 원문 DB의 절대량이 학위논문임을 감안할 때 대학도서관의 주장이 저작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의 저자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회원단체의 회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작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권리까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주장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용자보다는 저작자의 편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저작권법의 개정시 도서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 주장이 담긴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2. 개정의견 제출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의견		
현행규정	개정방향	사유 및 참고자료
제28조 ①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u>이용자가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 1부 복제하는 경우</u>	현 조항의 경우 현재 대부분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복사업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설령 복사업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서가 직접 복사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는 현실의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조문이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의견		
현행 규정	개정 방향	사유 및 참고자료
제28조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u>이용하여 이용자</u> <u>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u>	<p>법조문의 취지상 전송 범위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이용하며 과금 방법은 도서관은 통하지 않고 저작권 단체나 국가가 직접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진정한 DL의 발전을 원한다면 도서관 건물이라는 장소적 한계를 초월하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저작권보호를 위한 보상금제도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p> <p>또한 전송범위를 도서관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DL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각 도서관이 DL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p>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의견		
현행 규정	개정방향	사유 및 참고자료
②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이 통상 구입하고 있는 동일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동시 열람시의 이용자 수에 대한 문제로서 원문DB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도서관에 원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을 고려시한 규정으로서 설령 소장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부수가 각각 이어서 개개 파일별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동시 이용자 수를 그 도서관이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도서의 복본 부수에 맞추어 출판된 도서의 구입과 연계함이 타당하다.
제28조 ③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삭제	현행 규정은 DL발전에 엄청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DL의 최종적인 목적이 도서관의 장소적,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항과 동일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의견		
현행 규정	개정 방향	사유 및 참고자료
제28조 ④ 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u>제2항과 제3항</u> 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께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께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도서관 등이 비판매용으로 도서 등을 디지털 복제한 경우 그 도서 등을 판매용으로 디지털 복제할 수 없다.	비판매용으로 이미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가 동일한 것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이미 복제한 것은 폐기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고려하면 비판매용 DB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업자 우선인 이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
제 28조 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한 도서관 등이 소재한 학교 안에서의 경우는 제외한다.</u>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한 도서관 등이 소재한 학교 안에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법은 도서관이 부담금 납부의 주체로 되어 있으나, 디지털화가 정부의 장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의 지급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보상금을 부담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금 장치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즉 DB 구축은 도서관이 하더라도 보상금은 도서관의 공익적 성격과 이용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 이용자등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제를 한 도서관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과 그 도서관이 속한 학교 안에서의 보상금 징수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의견		
현행 규정	개정 방향	
<p><u>제 28조 ⑥ 제1항 내지</u> <u>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u>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저작재산권단체는</u>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u>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저작재산권단체는</u>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 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p>	<p>이 조항에 따르면 도서관이 저작권 보호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적 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저작재 산권단체는 저작권보호에 전 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p>
<p>시행령 제3조의 3(보상 금 지급 방법과 절차) ① 도서관 등은 법 제 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 산권자(저작인접권자, 출판권자 및 데이터베 이스 제작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 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저 작재산권단체”라 한다) 에 지급할 수 있다.</p>	<p>도서관 등이 <u>디지털 복제한 도서 등을 복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u>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는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 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 는 단체(이하 “저작재산권 단체”라 한다)에 <u>법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 학에서 간행하는 비판매용 도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 다.</u></p>	<p>동법에서 도서관 등은 보상 금 지급 주체가 아니다. 국가 나 저작재산권단체에서 시스 템을 설치하고 이용자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과금하여야 한 다. 도서관 등은 보상금 지급 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보 상금 문제는 이용자와 저작권 자와의 문제이다. 또한 대학에 서 간행한 비판매용 도서 즉 학위논문, 학술잡지 등은 저작 재산권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저작물이 대부분이 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p>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의견		
현행규정	개정방향	
<p>시행령 제3조의 3(보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p> <p>② 도서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복제 전송한 해의 다음해 4월 30일 까지 보상금을 그 복제 전송의 내역과 함께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삭제	도서관은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함이 마땅하다.

참 고 문 헌

- 김종철. “안방도서관의 실현과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디지털도서관』, 제34호(2004) : pp. 22-38.
- 홍재현.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4) : pp. 93-119.
- 홍재현.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19차 실무자 WORKSHOP 자료집』 (2004) : pp. 43-68.
- 이호신.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연구.” 『도서관』, 제59권, 제1호 (2004) : pp. 43-64.
- 유수현, 한상완.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4) : pp. 323-345.
- 이영아.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제도.” 『도서관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 pp. 5-24.
- 김동현. “도서관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약정서(안).” 『도서관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 pp. 57-74.
- 최경호. “도서관보상금 시스템을 중심으로.” 『복사와 전송』, 제4호(2004) : pp. 18-21.
- 우양태,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고찰.” 사대도협 저작권법세미나 자료(2004).
- 이형구, “저작권법이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사대도협 저작권법 세미나 자료(2004).
-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성명서(2004. 7).
-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성명서(2004. 7).